

- 2023년 국가기록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 추가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2023년 국가기록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5일

국 가 기 록 원 장

1. 추가합격자 : 1명

구분	직급	분야	합격자 명단	
			인원	응시번호
운전직	9급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1명	23057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합격자 결정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대상 : 추가합격자

나. 등록기간 : 2023. 4. 26.(수) ~ 5. 2.(화)

다. 등록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에 제출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403호(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라. 제출서류

- ① 신원진술서 2부. < 서식 1 >
- 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서식 2 >
-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서식 3 >
- ④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서식 4 >
- ⑤ 기본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기재된 것으로 발급
- 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⑦ 최근 6개월 이내 탈모한 상반신 사진 반명함판(3×4) 3매.

3. 유의사항 안내

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임용 포기서를 작성(서식5)하여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다. 추가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인사) 042-481-6208 / (채용) 6209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대폰 : E-mail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책	거주지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적	본인	가족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있음				. . ~ . .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중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석사·박사 또는 졸업·중퇴·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경 력 · 겸직 사항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별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자격·면허						
해외 거주 이력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북한 거주 친족	관계	성 명	직업·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 국적, 재산, 병역, 학력, 경력, 자격·면허, 해외거주 이력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정당·사회단체 경력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 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전문의 소견서

※ 하단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③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② 응시직명		④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의 질환명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한 의견	※ 필요한 경우 양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견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질환과 업무수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전문의 (서명 또는 인)

※ 소속 병원명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①란에는 시험실시기관(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을 적어야 합니다.

[전문의]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 위 소견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응시자의 질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앞쪽)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 직명	④ 응시 번호	⑤ 성 명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
(재신체검사 결과 등)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분야 전문의)

(서명 또는 인)

신체검사 판정결과	[]합 격 []불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불합격 또는 판정보류 사유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이 복수인 경우, 같은 분야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판정보류 질환에 대한 전문의 검사결과”란에는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신체검사서에서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0000 질환에 대하여 0000 한 이유로 00000 라고 판단함
3. “신체검사 판정결과”란에는 신체검사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된 판정보류 사유와 이에 대한 전문의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보류 여부를 적습니다.
 - 가. 합격 사유(‘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기재의 예
 -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이 있으나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 공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이지만 글씨를 충분히 확대할 경우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
 -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치료 시 증세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당장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합격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치료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치료를 위해 판정보류를 유지
 - ※ 재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재신체검사만 다시 받으면 됩니다.
 - 다.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해당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u>조회자료</u>(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 서식 4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임용 포기서

- 시 험 명 :
- 응시직급 :
- 응시분야 :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위 본인은 ()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성 명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